소방청 공고 제2026-183호

소방청 하반기 전문경력관(항공조종)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소방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소방청장

1 임용예정인원 (2개 직위, 총 7명)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전문경력관 가군(항공조종담당)	2명	정년 적용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전문경력관 나군(항공조종담당)	5명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전문경력관 규정」,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3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항공조종 담당	전문경력관 가·나군	○ 소방 헬리콥터를 활용한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 대형특수 재난에 대응하는 특수구조대원 출동 이송 ○ 산불화재 및 특수화재 항공 진압, 시험비행 및 기술 유지 비행 ○ 소방 헬리콥터 운항관리 및 교육훈련 ○ 그 밖에 헬리콥터 운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 2](직무기술서) 참조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 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항공안전법」 제43조에 따른 자격증명의 효력 정지 및 취소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전문경력관 가군**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항공조종	응시 자격 요건	①「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른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헬리콥터에 한함) 소지 및 2년 이상의 조종경력(해당 자격증 소지하기 전의 경력 포함)이 있는 사람 ② 헬리콥터 조종경력을 총 2,000시간 이상(다발 헬리콥터 조종 500시간 포함) 보유한 사람(모의비행시간은 비행시간에서 제외) -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비행시간은「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③ 전자전파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④「항공안전법」제44조에 의한 계기비행 자격증명 소지자 또는 4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훈련을 충족한자 ♦ 4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훈련을 충족한 사람이란? - 계기비행은 실제비행과 모의계기비행으로 구분(비행경력증명서) - 계기비행 중 실제비행이 40시간 이상이면 충족 - 계기비행 중 실제비행과 모의계기비행시간을 합하여 40시간 이상이면 충족 단 모의계기비행시간은 20시간 이내만 합산가능 예) 실제비행20시간 + 모의계기비행 20시간 = 40시간으로 충족 실제비행15시간 + 모의계기비행 25시간 = 35시간으로 미충족 ※ 계기비행 시간은「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 전문경력관 나군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항공조종	응시 자격 요건	①「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른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헬리콥터에 한함) 소지 및 1년 이상의 조종경력(해당 자격증 소지하기 전의 경력 포함)이 있는 사람 ② 헬리콥터 조종경력을 총 1,000시간 이상(모의비행시간은 비행시간에서 제외) -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비행시간은「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③ 전자전파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④「항공안전법」제44조에 의한 계기비행 자격증명 소지자 또는 4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훈련을 충족 한 자 ♦ 4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훈련을 충족한 사람이란? - 계기비행은 실제비행과 모의계기비행으로 구분(비행경력증명서) - 계기비행 중 실제비행이 40시간 이상이면 충족 - 계기비행 중 실제비행과 모의계기비행시간을 합하여 40시간 이상이면 충족 단 모의계기비행시간은 20시간 이내만 합산가능 예) 실제비행20시간 + 모의계기비행 20시간 = 40시간으로 충족 실제비행15시간 + 모의계기비행 25시간 = 35시간으로 미충족 ※ 계기비행 시간은「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① '응시자격요건'(자격증 및 경력)에 기재된 사항을 모두 충족하면 응시 가능

②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③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6.10.12.)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함

④ 자격증, 경력, 우대요건의 모든 사항은 **증빙자료 제출 건만 인정함**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서류 확인 결과 부적합자는 합격 취소 또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총족한 것으로 봄

○ 경력의 범위

①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② 프리랜서, 자원봉사, 단체활동, 개인사업자 경력 등의 경우 당해 직위와 관련된 일정 규모·수준 이상의 연구·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경력의 일부를 인정

※ '개인사업자' 경력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증명(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및 해당 기간 매출·소득액, 계약서 및 포트폴리오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의회 판단에 따라 일정 범위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③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④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다. 우대요건 및 가산점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2026. 10. 12.) 기준]

구분	우대요건
전문경력관 가·나군	○ 해당기종 비행경력(100~1,000시간) 우대 - KUH(MUH 포함) 계열, S-92(VH-92) 계열, EC-225기종, AW159 기종 비행시간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해당기종의 비행경력에 대해서만 우대(비행경력에 따라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가산점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4명 이상 선발단위에만 적용되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음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대상자는 본인이 해당되는 가점적용비율을 직접 확인하여 원서접수 시 둘 중 하나를 선택 제출)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⑦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

※ 가점 적용대상: 6급 이하 공무원(시험단계별 점수화된 서류전형 및 실기시험에 적용)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직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일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

나. 실기시험

- **(시험대상)**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기준)** 당해 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평정표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평정하고 점수 부여

채용분야	실기시험 평정항목
조종사 (모의비행 10개 항목)	① 이륙 상승 및 선회 ② 강하 및 선회 ③ 헬기장 접근 ④ 구조·구급 임무 ⑤ 화재진압 임무 ⑥ 자세회복 ⑦ 계기비행 전환 ⑧ 무선교신절차 ⑨ CRM(승무원 자원관리) ⑩ 비상절차

- **(합격기준)** 평정위원 합산점수에서 평정항목별 40퍼센트 이상, 전 평정항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다. 면접시험

-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소통・공감, ②헌신・열정, ③창의・혁신, ④윤리・책임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 실기시험(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응시번호는 '26. 10. 19.(월) 10:00부터 확인 가능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구분	시험일정	장소/방법
시험공고	2026. 9. 21.(월)	소방청 누리집,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응시원서 접수	2026. 10. 6.(화) ~ 10. 12.(월)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6. 10. 28.(수)	소방청 누리집,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실기시험	2026. 11. 10.(화) ~ 11. 20.(금)	장소 별도 공지

실기시험 합격자발표	2026. 11. 26.(금)	소방청 누리집,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면접시험	2026. 12. 10.(목) ~ 12. 11.(금)	장소 별도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2. 24.(목)	소방청 누리집,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 최종합격자는 임용 전 「항공안전법」 제40조에 의한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제출해야 함.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미제출하거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등 효력이 상실된 경우는 합격이 취소되니, 갱신검사 등을 통해 유효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준비 필요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 '26. 10. 6.(화) 10:00 ~ 10. 12.(월) 18:00

 ※ 접수 취소 기간 : 2026. 10. 13.(화) 10:00 ~ 10. 15.(목) 18:00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https://gongmuwon.gosi.kr)에 접속, 안내에 따라 접수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주말·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접수 가능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해야 함

 ※ 시스템 접속 시간과 관계없이 18시 이후부터는 접수 불가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지 않으면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 포기로 처리

 – 응시자는 원서접수 완료 후 정확한 접수가 되었는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서 확인할 것(마이페이지 → 내접수내역)

 – 원서접수 이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 제출

 ※ 면접시험 시 신분증, 응시표, 관련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소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면접시험일에 제출

- 응시수수료: 전문경력관 가·나군 7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민법」 상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됨

나. 제출서류

- 증명서류는 서류전형 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 심사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 시 불합격 처리함
- 경력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상담(☎ 044-205-7286) 후 모든 서류구비 후 제출할 것을 권장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구분	서류	비고
공통 (필수 제출)	1. 응시원서 1부	○ 인터넷 접수
	2. 이력서 1부(한글 파일과 PDF파일 각각 1부)	○ 별지서식 제1호
	3.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기재 및 서명) 1부	○ 별지서식 제4호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자필기재 및 서명) 각 1부	○ 별지서식 제5호
	7.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자필기재 및 서명) 1부	○ 별지서식 제6호
	8.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기간) 1부	
	9. **(남성만 제출)**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으면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10.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명서 1부	
	11. 경력(재직)증명서 1부	
	12. 비행경력증명서(각 근무 기관별 최종 비행시간이 명시된 발행본) 1부	
	13. 계기비행자격증명서 1부	
	14. 항공무선통신사 또는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사본 1부	
개별사항 (해당자만 제출)	자력표(국방부), 군부대 경력증명서 중 임용사항, 근무경력, 징계사항 등이 상세히 기재된 것 1부	군 경력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1부	가산점 대상자
	아래의 기종이 포함된 비행경력증명서 - KUH(MUH 포함) 계열, S-92(MH-92) 계열, EC-225기종, AW159 기종 비행시간	우대요건 대상자
	근무경력 사실확인서(해산 또는 폐업)	○ 별지서식 제7호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

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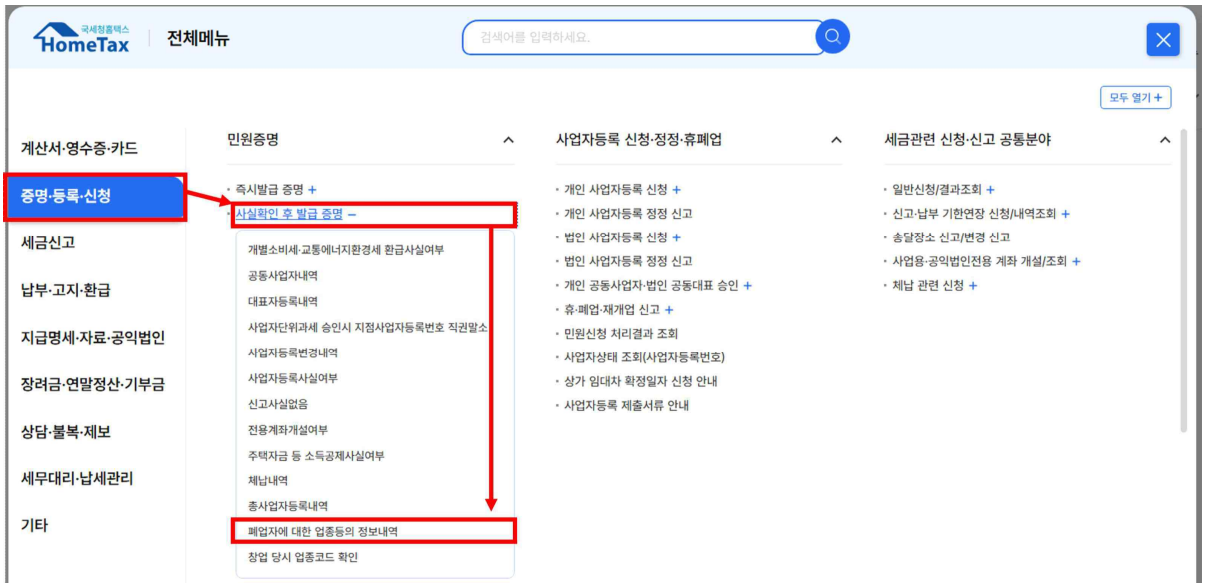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별지서식 제7호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12. 28. ~ '27. 12. 27.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7년 1월 중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9 안내 및 참고사항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되거나, 항공신체검사증명(제1종) 미제출 및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효력 상실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절차: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044-205-7286~92)

2) 직무 관련 사항: 중앙119구조본부 기획협력과(053-712-1017)

※ 문의전화: 09:00~18:00, <토요일,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 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전문경력관 가군(항공조종)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항공조종담당	전문경력관 가군	2명

근무예정부서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주요 업무	○ 소방 헬리콥터를 활용한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 대형특수 재난에 대응하는 특수구조대원 출동 이송 ○ 산불화재 및 특수화재 항공 진압, 시험비행 및 기술 유지 비행 ○ 소방 헬리콥터 운항관리 및 교육훈련 등 ○ 그 밖에 헬리콥터 운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 **(직급별 역량)** 비행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전략적 사고력, 논리적사고
필요 지식	○ 항공안전 및 인명구조 관련 기술 ○ 항공안전관리, 잠재위험 관리, 안전 증진 등 항공사고 방지에 관한 지식 ○ 소방 헬리콥터의 특수성 및 해외 사례 분석에 필요한 지식 ○ 항공기상 및 항공 교통 관제 지식

※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응시자격요건	**필수요건**	①「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른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헬리콥터에 한함) 소지 및 2년 이상의 조종경력(해당 자격증 소지하기 전의 경력 포함)이 있는 사람 ② 헬리콥터 조종경력을 총 2,000시간 이상(다발 헬리콥터 조종 500시간 포함) 보유한 사람(모의비행시간은 비행시간에서 제외) -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비행시간은「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③ 전자전파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④「항공안전법」제44조에 의한 계기비행 자격증명 소지자 또는 4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훈련을 충족한자 ♦ 4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훈련을 충족한 사람이란? - 계기비행은 실제비행과 모의계기비행으로 구분(비행경력증명서) - 계기비행 중 실제비행이 40시간 이상이면 충족 - 계기비행 중 실제비행과 모의계기비행시간을 합하여 40시간 이상이면 충족 단 모의계기비행시간은 20시간 이내만 합산가능 예) 실제비행20시간 + 모의계기비행 20시간 = 40시간으로 충족 실제비행15시간 + 모의계기비행 25시간 = 35시간으로 미충족 ※ 계기비행 시간은「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우대요건 (서류전형에 한함)		○ 해당기종 비행경력(100~1,000시간) 우대 - KUH(MUH 포함) 계열, S-92(VH-92) 계열, EC-225기종, AW159 기종 비행시간

전문경력관 나군(항공조종)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항공조종담당	전문경력관 나군	5명

근무예정부서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주요 업무	○ 소방 헬리콥터를 활용한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 대형특수 재난에 대응하는 특수구조대원 출동 이송 ○ 산불화재 및 특수화재 항공 진압, 시험비행 및 기술 유지 비행 ○ 소방 헬리콥터 운항관리 및 교육훈련 등 ○ 그 밖에 헬리콥터 운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 **(직급별 역량)** 비행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전략적 사고력, 논리적사고
필요 지식	○ 항공안전 및 인명구조 관련 기술 ○ 항공안전관리, 잠재위험 관리, 안전 증진 등 항공사고 방지에 관한 지식 ○ 소방 헬리콥터의 특수성 및 해외 사례 분석에 필요한 지식 ○ 항공기상 및 항공 교통 관제 지식

※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응시자격요건	**필수요건**	①「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른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헬리콥터에 한함) 소지 및 1년 이상의 조종경력(해당 자격증 소지하기 전의 경력 포함)이 있는 사람 ② 헬리콥터 조종경력을 총 1,000시간 이상(모의비행시간은 비행시간에서 제외) -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비행시간은「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③ 전자전파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④「항공안전법」제44조에 의한 계기비행 자격증명 소지자 또는 4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훈련을 충족 한 자 ♦ 4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훈련을 충족한 사람이란? - 계기비행은 실제비행과 모의계기비행으로 구분(비행경력증명서) - 계기비행 중 실제비행이 40시간 이상이면 충족 - 계기비행 중 실제비행과 모의계기비행시간을 합하여 40시간 이상이면 충족 단 모의계기비행시간은 20시간 이내만 합산가능 예) 실제비행20시간 + 모의계기비행 20시간 = 40시간으로 충족 실제비행15시간 + 모의계기비행 25시간 = 35시간으로 미충족 ※ 계기비행 시간은「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우대요건 (서류전형에 한함)		○ 해당기종 비행경력(100~1,000시간) 우대 - KUH(MUH 포함) 계열, S-92(VH-92) 계열, EC-225기종, AW159 기종 비행시간
가산점		○ 취업지원 대상자

【별지서식 제1호】

이력서(전문경력관 가군 항공 조종)

가. 공통사항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응시분야	전문경력관 가군 항공 조종	성 명	

나. 응시자격 ※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				
자격증	자격증명	취득(예정)일	자격번호	검정기관
	회전익 조종사 육상다발	yy-mm-dd		한국교통안전공단
	전자전파통신기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전파통신산업기사			
	항공무선통신사			
	계기비행자격증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종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yy-mm-dd~yy-mm-dd		

비행경력	조종시간 (모의비행시간은 제외)	계기비행시간		다발 헬기 조종시간(조종시간에 포함)	
		실제	모의	항공기형식(기종)	조종시간

다. 우대사항 : KUH(MUH 포함) 계열, S-92(VH-92) 계열, EC-225기종, AW159 기종 ※ 경력에 대한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해당기종의 비행경력에 대해서만 우대(비행경력에 따라 차등 우대)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비행경력증명서와 동일하게 기재.			
비행경력	항공기 형식(기종)	일자	비행시간

※ 작성 유의사항

1) 이력서와 제출하신 서류를 기초로 서류전형이 진행되며, 이력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정하지 않습니다.
2) 자 격 증 :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합니다.
3) 조종경력: 제출한 경력증명서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기재란 부족 시 셀을 나누어 기재 바랍니다.
4) 비행경력: 제출한 비행경력증명서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기재란 부족 시 셀을 나누어 기재 바랍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인)

이력서(전문경력관 나군 항공 조종)

가. 공통사항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응시분야	전문경력관 나군 항공 조종	성 명	

나. 응시자격 ※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				
자격증	자격증명	취득(예정)일	자격번호	검정기관
	회전익 조종사 육상다발	yy-mm-dd		한국교통안전공단
	전자전파통신기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전파통신산업기사			
	항공무선통신사			
	계기비행자격증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종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yy-mm-dd~yy-mm-dd		

비행경력	조종시간 (모의비행시간은 제외)	계기비행시간		다발 헬기 조종시간(조종시간에 포함)	
		실제	모의	항공기형식(기종)	조종시간

3. 우대사항 : KUH(MUH 포함) 계열, S-92(VH-92) 계열, EC-225기종, AW159 기종 ※ 경력에 대한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해당기종의 비행경력에 대해서만 우대(비행경력에 따라 차등 우대)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비행경력증명서와 동일하게 기재.			
비행경력	항공기 형식(기종)	일자	비행시간

※ 작성 유의사항

1) 이력서와 제출하신 서류를 기초로 서류전형이 진행되며, 이력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정하지 않습니다.
2) 자 격 증 :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합니다.
3) 조종경력: 제출한 경력증명서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기재란 부족 시 셀을 나누어 기재 바랍니다.
4) 비행경력: 제출한 비행경력증명서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기재란 부족 시 셀을 나누어 기재 바랍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인)

【별지서식 제2호】

자기소개서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전문경력관 0군(조종 또는 정비)		. . .

※ 작성 요령

- 제시된 소제목(주제)을 바탕으로 작성자 본인의 역량을 기술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한글(hwp) 또는 자필을 사용하여 작성 (휴먼명조, 13p)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유의사항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하면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	
응시취지 및 응시분야에 대한 소견	**(지원동기 및 포부)**
학업 및 경험(경력)	**(성취도 및 활동내용)**
특기사항	**(장점, 보유자격 및 기술 등)**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별지서식 제3호】

직무수행 계획서

응시번호		성명	

■ 작성 요령

- 한글(hwp) 양식으로 작성할 것
-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3매(총 4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글자체는 휴먼명조 / 크기는 13포인트 / 글자 색은 검정
- 줄 간격 160%로 작성할 것
- 보고서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 시험공고에 명시된 채용예정 직무분야 업무와 연계하여 자유롭게 작성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구체적 실천방안 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하면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 안내 사항은 삭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별지서식 제4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명		응시부처	소방청
생년월일	. . .	응시직급	전문경력관 0군(조종 또는 정비)

본인은 소방청에서 시행하는 **전문경력관 0군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소방청이 실시하는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5조 등에 따라 **채용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소방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5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소방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6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소방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부정행위, 결격·범죄, 자격(응시요건) 확인 등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조회
2	결격·범죄 통합 조회
3	자격(면허)증, 응시자격 등 확인
4	복수국적 여부 확인
5	병역의무 이행여부 확인
6	기타 채용시험 관련 제출서류

※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제출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국가기술자격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인 방법(공동이용 행정정보)으로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아 서류의 진위 확인, 결격사유 조회 등이 불가능할 때는 당해 시험에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방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근무경력 사실확인서(해산 또는 폐업)

이 사실확인서는 해산(폐업)에 따른 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 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 경력	사업체명	해산(폐업) 연도	직 위	재직기간	담당업무
				. . . ~ . . . (년 월)	

입증인(1)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근무처(직위):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와의 관계: 연락전화번호: - -

입증인(2)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근무처(직위):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와의 관계: 연락전화번호: - -

붙임: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1부

소방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8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 방 청

National Fire Agency 119